#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75 발의연월일: 2024. 11. 1.

발 의 자: 박해철 · 송옥주 · 권향엽

문금주・김 현・황정아

오세희 • 이광희 • 최민희

주철현 • 백승아 • 허성무

의원(12인)

## 제안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및 거주지이전 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물론 거주지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를 도입 하여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 등(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보호관찰소의 장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검사

에게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함.

- 2)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가 신청된 사람이 거주지 제한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에 거주지 제한명령을 청구하여야 함.
- 3)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범죄경력, 재범의 위험성, 직업, 경제력, 건강상태, 가족상황, 주거상태, 거주지등과 어린이집·학교와의 거리 등 주변 환경 및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나. 거주지 제한명령의 결정(안 제9조)

- 1)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 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여야 함.
- 2)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을 결정하는 경우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 대상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또는 성충동 약물치료명 령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음.
- 3)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등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법무 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중 하나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로 지정하여야 함.

#### 다. 거주제한 대상자의 의무(안 제15조)

- 1) 거주제한 대상자는 1일 이상의 출장·여행·출국 등의 사유로 지정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소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2) 거주제한 대상자는 거주지 제한명령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내부 출입요구 및 점검요구 등 지시에 따라야함.

#### 라. 거주지 제한명령의 변경(안 제16조)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이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직업, 가족상황 및 주거상태의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지정 거주지를 변경하는 결정을할 수 있음.

#### 마. 거주지 제한기간의 연장(안 제17조)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거주지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바. 벌칙(안 제25조)

거주제한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 제1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률 제 호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 및 지정하는 조치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여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저지른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종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성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 나. 성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고 법률 제 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고지받은 사람

- 2. "거주"란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매일 기거하는 것을 말한다.
- 3. "거주지등"이란 거주지 또는 거주 예정지를 말한다. 다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를 말한다.
- 4. "거주지 제한명령"이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여 거주하도록 하는 명령을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 각 목의 형기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성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이외의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형의 전부를 형기로 본다.
- 2. 하나의 판결에서 성폭력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과 거주 이전 등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 및 재판

- 제4조(거주지 제한명령 청구의 신청) ①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고위 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등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형법」 제72조제1 항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2.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의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 한다)이 부과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는 경우 검사에게 인적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가 신청 된 사람이 거주지 제한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거주지 제한명령을 청구 하여야 한다.
- 제6조(조사) ①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를 신청한 보호관찰소

- 의 장에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 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법원에 대한 거주 지 제한명령 청구의 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 1. 범죄경력 및 범죄의 동기·내용·수법
- 2.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연령 및 피해자의 수
- 3. 재범의 위험성
- 4. 직업 및 경제력
- 5. 건강상태, 가족상황 및 주거상태
- 6. 거주지등과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의 거리 등 주변 환경
- 7. 치료명령 부과 여부
- 8. 그 밖에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조언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7조(거주지 제한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대상자의 성명과 그 밖에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2. 청구의 이유
- 3. 적용 법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8조(거주지 제한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의 관할로 한다.
- 제9조(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등) ①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가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이하 "부착기간"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등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

도를 말한다)에 소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 하 "지정거주시설"이라 한다) 중 하나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 주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는 거주지 제한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⑤ 국가는 지정거주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등에 따른 조치) 법원은 제9조에 따라 거주지 제한명령을 고지한 때에는 그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3일 이 내에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를 신청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 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11조 (국선변호인 등)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

## 제3장 거주지 제한명령의 집행

- 제12조(집행지휘) ① 거주지 제한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 관이 집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결정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제13조(거주지 제한명령의 집행) ①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

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명령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이하 "특정범죄사건"이라 한다)에 대한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다만, 부착명령의 원인이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구금의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가석방 되는 날 또는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가석방 되는 날 또는

- ②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명령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집행한다.
- ③ 보호관찰관은 제9조에 따라 거주지 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하 "거주제한 대상자"라 한다)의 부착명령 집행에 따른 위치추적과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하여 거주지 제한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은 거주제한 대상자가 거주지 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주제한 대상자의 거주지 내부에 출입하여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확인하고 점검하여야한다.
- ④ 거주지 제한명령의 집행 정지에 관한 사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은 "거주지 제한명령"으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거주지 제한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강화)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거주제한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라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및 "성충동 조절치료를 받을 것" 등의 준수사항이 부과 또는 추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주제한 대상자 1명만을 전 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5조(거주제한 대상자의 의무) ① 거주제한 대상자는 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의 출장·여행·출국 등의 사유로 지정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소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거주제한 대상자는 거주지 제한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내부 출입요구 및 점검요구 등 지시에 따라야한다.
  - ③ 제1항의 구체적인 허가 절차 등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거주지 제한명령의 변경)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이후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거주지 제한명령에 따른 지정 거주지를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7조(거주지 제한기간의 연장) 거주제한 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 제한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거주지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8조(거주지 제한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거주지 제한명령의 임시 해제 신청과 이에 대한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 제19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거주지 제한명령이임시해제된 자가 부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임시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된 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임시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일정한 거주지가 없거나 임시해제 결정 당시의 가족관계, 주거환 경 등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또는 「보호관찰 등

- 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해제가 취소된 자는 잔여 거주지 제한명령 기간 동안 지정된 거주지(임시해제를 결정하기 전의 거주지를 말한다)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해제 기간은 거주지 제한명령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20조(거주지 제한명령의 종료) 제9조에 따른 거주지 제한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 1. 거주지 제한명령 기간이 경과한 때
  - 2. 부착명령 집행을 종료한 때
  - 3. 거주지 제한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거주지 제한기간을 경과한 때
- 제21조(비용부담) ① 거주제한 대상자는 거주지 제한기간 동안 거주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②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보칙

제22조(거주지 제한기간의 계산) ① 거주지 제한기간은 이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되, 첫날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 ②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거주지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23조(거주제한 임시해제의 의제)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명령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24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벌칙

- 제25조(벌칙) 거주제한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1일 이상의 출장·여행·출국 등을 하는 때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의 출입요 구 또는 점검요구 등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지 제한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